

대구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1319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3179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131964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이현정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일환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2.자, 별지 목록 제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9.자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8. 8. 14. 접수 D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E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F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G로 마친각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화물운송대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8. 7.경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부터 2018. 8. 3.까지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C는 원고에게 140,591,0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9982호로 운송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4. 28. 'C는 원고에게 140,591,000원 및 그 중 64,317,000원에 대한 2018. 7. 1.부터, 71,533,000원에 대한 2018. 8. 1.부터, 4,741,000원에 대한 2018. 8. 4.부터 각 2020.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1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C는 피고와 사이에, 2018. 8. 2.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2018. 8. 9. 별지 목록 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8. 8. 14.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8. 8. 14. 접수 D로, 별지 목록 제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E로, 별지 목록 제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F로, 별지 목록 제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G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고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 H는 당시 C의 사내이사였다.

다. C는 2018. 8.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가 2018. 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C의 사내이사였던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각 차량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지민

자동차의 표시

1. 제1목록

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866-2-00149-0000-3315
차명	한국쓰리축21톤카고트럭
차종	화물대형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D11
사용본거지(차고지)	대구광역시 북구
등록연월일	2015-09-04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1. 제2목록

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866-2-00159-0000-3315
차명	한국쓰리축14톤카고트럭
차종	화물대형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D11
사용본거지(차고지)	대구광역시 북구
등록연월일	2015-10-0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1. 제3목록

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A03-1-00094-0055-3311
차명	대우22.5톤후삼축카고트럭
차종	화물대형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ISM
사용본거지(차고지)	대구광역시 북구
등록연월일	2011-08-28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1. 제4목록

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866-2-00149-0000-3315
차명	한국쓰리축21톤카고트럭
차종	화물대형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D11
사용본거지(차고지)	대구광역시 북구
등록연월일	2015-10-15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